

1. 개정 이유

무상사용 거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지급을 법제화하는 등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전을 도모하고, 임차 영농인 등 실제 경작자 보호 및 토지수용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결신청 청구 우편제출 방법 개선(안 제12조)

- 재결신청 청구서의 제출 방법을 “배달증명취급우편물” 뿐만 아니라 “내용증명우편물”까지 확대

나. 부채부동산소유자 거주사실 입증자료 구체화(안 제15조제1항)

- 부채부동산 소유자의 거주 입증방법(공공요금 영수증 등 객관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는 방법) 구체적 명시

다. 농업손실보상 산출기준 통일(안 제48조제2항)

- 실제 소득인정 영농보상 산출기준을 “실제소득”에서 “직전 3년간 실제소득 평균” 금액으로 하여 일반 영농보상기준과 통일

라. 농지 소유권 이전에 따른 임차 영농인 권리 보호(안 제48조제5항)

- 현행 규정이 임대 농지의 소유권 이전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 되지 않는다는 농지법과 일치하지 않아 불필요한 문구 삭제

마. 농업손실보상 시 실제 경작자 확인 방법 개선(안 제48조제7항)

- 실제 농작물 경작자 확인자료에 ‘직불금 수령 확인자료’ 및 ‘농어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추가하여 경작자 인정방법 공신력 제고

바. 이주대책대상자 이주정착금 현실화(안 제53조제2항)

- 이주대책 혜택과의 형평성, 주택 평균가격 등 고려, 지급한도 상향

사. 무상사용 거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지급 명확화(안 제54조제2항)

-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인 “세입자”에 무상 사용 거주자도 포함하여 지급 대상 개선 및 혼란 방지

아. 주거용 건축물 거주자 거주사실 입증방법 마련(안 제54조의2 신설)

- 주거용 건축물에 실제 거주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방법에 대한 공통 기준이 없어 입증방법(안 제15조제1항 준용) 마련

자. 수용재결 신청 청구 등에 대한 사전안내 강화(별지안 제6호서식)

- 보상계획 공고 시 “토지소유자 등은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권리 사전 고지 의무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8. 00. ~ 9.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다목의 규정에 의한 배달증명취급우편물”을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증명취급우편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요금영수증 등 객관성이 있는 자
료에 의하여 입증하는 방법”을 “객관성이 있는 다음의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는 방법”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공공요금영수증

나.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라. 고용보험료 납입증명서

마. 전화사용료 납부확인서

바. 케이블텔레비전 수신료 납부확인서

사. 인터넷 사용료 납부확인서

아.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자. 자료의 재학증명서

차. 연말정산 등 납세 자료

카. 그 밖에 실제 거주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

제48조제2항 중 “실제소득”을 “직전 3년간 실제소득 평균”으로 한다.

제48조제5항 중 “당해 농지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삭제한다.

제48조제7항 중 “제3호”를 “제5호”로, 각 호 외의 부분 중 “3.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이장·통장이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 “4. 그 밖에 실제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를 “5.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이장·통장이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 “6. 그 밖에 실제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로 하고, “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불금 수령 확인자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신설한다.

제53조제2항 중 “6백만원”을 “1천2백만원”으로 하고, “1천2백만원”을 “2천4백만원”으로 한다.

제54조제2항 중 “세입자(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한다)”를 “세입자(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를 포함하되,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주거용 건축물 거주자의 거주사실에 대한 입증방법)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 거주자의 거주사실 입증을 위하여 제15

조제1항을 준용할 수 있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15조(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주정착금상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공익사업시행지구부터 적용한다.

사업시행자의 명칭

수신자
(경유)

제 목 보상에 관한 협의 요청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의 보상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오니 협의기간 내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토지 중 일부가 공익사업 시행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 기간		
협의 장소		
협의 방법		
보상하는 시기, 방법 및 절차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보상액 명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또는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원래 면적) 또는 수량	보상액	비고

사업시행자 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또는 인)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또는 인)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또는 인)

협조자

시행	처리기관-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기관-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

- 7 -

작성 방법

1.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가 분할되는 경우에는 분할 전의 지번은 면적은 "지번(원래 지번)" 및 "면적(원래 면적) 또는 수량"

란에 ()로 적습니다.

현행	개정안
제12조(재결신청청구서의 제출방법)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청구서의 제출은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제4호 <u>다목의 규정에 의한 배달증명취급우편물</u> 로 우송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2조(재결신청청구서의 제출방법) ----- ----- ----- ----- ----- <u>각 목의 규정에 의한 증명취급우편물</u> ----- -----.
제15조(부채부동산소유자의 거주 사실 등에 대한 입증방법) ① 영 제2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거주사실의 입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제15조(부채부동산소유자의 거주 사실 등에 대한 입증방법) ① ----- ----- ----- -----.
1. 「주민등록법」 제2조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확인을 받아 입증하는 방법	1. ----- ----- ----- ----- ----- -----
2. <u>공공요금영수증 등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는 방법</u>	2. <u>객관성이 있는 다음의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는 방법</u>
<신 설>	가. 공공요금영수증

<u><신 설></u>	<u>제54조의2(주거용 건축물 거주자의 거주사실에 대한 입증방법)</u> <u>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 거주자의 거주사실 입증을 위하여 제15조제1항을 준용할 수 있다.</u>
--------------------	---